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8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3항 중 "대차대조표"를 각각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금의 회계) ①・② (생	제6조(기금의 회계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	③
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	
한 결산보고서· <u>대차대조표</u> 및	
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	
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	
제출하고, <u>대차대조표</u> 를 지체	<u>재무상태표</u>
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